

거창군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 제19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적용)

안 제24조 중 “거창군건축조례 제38조”를 “거창군 건축조례”로 한다.

안 제30조 제2항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안 제32조 내지 제35조 및 제37조, 제38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안 제51조 본문 중 “영 제80조의 규정”을 “영 제80조 및 경상남도도시 계획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안 제52조를 삭제하고 “안 제53조”를 “안 제52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54조 내지 안 제58조”를 “안 제53조 내지 안 제57조”로 한다.

“안 제59조”를 “안 제58조”로 하고
제15호 중 “60퍼센터 이하”를 “ 80퍼센터 이하”로 한다.

“안 제60조”를 “안 제59조”로 한다.

‘안 제61조’를 “안 제60조”로 하고, 제1항 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안 제62조 내지 안 제76조”를 “안 제61조 내지 안 제75조”로 한다.

안 부칙 제5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별표3] 중 제4호, 제10호,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것(너비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안 [별표4] 중 제6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

안 [별표5] 중 제6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상점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

안 [별표6]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안 [별표8] 중 “제17호 및 제18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안 [별표14]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안 [별표15] 중 “제4호 내지 제9호”를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제4호·제11호·제13호를 각각 신설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안 [별표16] 제5호 중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동·식물원”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안 [별표17]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안 [별표18] 중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4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고물상은 제외한다)

안 [별표19] 중 설명문의 괄호내 “제9호의1”를 “제10호”로 하고, 제4호, 제5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 가목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안 [별표20]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및 제7호를 신설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안 [별표22]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안 [별표23] 중 설명문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내지 제16호”를 “제6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제3호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한다)
10. 별표18 제6호 및 별표19 제11호의 공장

안 [별표24] 를 삭제한다.